



도 담 도 담



공무원 성범죄 처벌 강화

국가공무원법 개정 (‘18.10.16. 개정, ‘19.4.17. 시행)



◆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유

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,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,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.

◆ 주요 내용



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,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(제17조제4항, 신설)

1 임용결격 사유

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성특법 제33조 6의3)

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성특법 제33조 6의3, 개정)

- 형법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
- 성특법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

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에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(제33조 6의4, 신설)

2 당연퇴직 사유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(당연퇴직)

1. ----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----- (개정)

국가공무원법 개정 전후 차이

▶ 개정 전

- 임용결격, 당연퇴직 사유 성범죄가
- 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
 - 「성특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한정

▶ 개정 후

- 임용결격, 당연퇴직 사유 성범죄가
- 「성특법」 제2조(사실 상 성 관련 모든 성범죄)
 - 「아청법」 제2조제2호(아동·청소년에 대한 모든 성범죄)로 확대 됨

성특법 제2조: 강간, 강제추행과 관련된 모든 성범죄 외에 음행매개, 음화반포·제조, 공연음란죄도 포함

